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09
----------	------

2020년 6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년 5월 25일, 유정희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유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4.2. 공포, 2020.4.3. 시행)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58호, 2020.4.3.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제5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함(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2019년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부터 현행법 적용대상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9년 4월 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지난 4월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기간 동안 동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임.

- 또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등 5개<sup>1)</sup> 시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은 2015년 12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설 항목임.

---

1)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현재까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들을 차질 없이 관리해 왔다고는 하나, 약 4년 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었던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조례 개정 전·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µg/m <sup>3</sup> )	.....	.....
개정 전	개정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 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 장업의 영업시설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b>실내 어린이놀이시설</b>	현행과 같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운행하도록”을 “관리·운영하도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	이산화탄소 (CO <sub>2</sub> , ppm)	폼알데하이드 (HFD, $\mu\text{g}/\text{m}^3$ )	총부유세균 (CFU/ $\text{m}^3$ )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p> <p>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u>법 제9조의2제1항</u>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p> <p>① -----  <del>법 제9조의3제1항</del>                      -----                      -----</p> <p>관리·운행하도록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미세먼지 (PM-10, μg/m<sup>3</sup>)</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 이하</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의료기관, <u>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75 이하</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μg/m <sup>3</sup>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u>	100 이하			의료기관, <u>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u>	75 이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미세먼지 (PM-10, μg/m<sup>3</sup>)</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의료기관, <u>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μg/m <sup>3</sup>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u>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u>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μg/m <sup>3</sup>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u>	100 이하																								
의료기관, <u>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u>	75 이하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μg/m <sup>3</sup>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u>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u>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u>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u>	현행과 같음																								